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6일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재진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유만희, 이성배, 이은림,
이효원, 허 훈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시 기존 서면동의 외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용함(안 제9조의2)
- 나.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- 다.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전자서명동의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둬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동의서”를 “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

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<u>동의서</u>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</p>	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- ----- ----- -----</p>

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후단 신설>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. 이 경우 동의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존 서면동의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 성격의 개정안이므로,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